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8.4.(목) 조간 2022.8.3.(수) 12:00	배포 일시	2022. 8. 3.(수)		
담당 부서 <총괄>	장애인정책국	책임자	과장	박종균	(044-202-3310)
	장애인권익지원과	담당자	서기관	최기전	(044-202-3301)
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·배포

- 「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」 교육자료 제작·배포 -

-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(이하, ‘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’)를 위한 교육자료인 ‘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’를 제작·배포했다.
-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*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.
 - *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, 장애인활동지원인, 119구급대원, 보육교직원, 초·중·등교육법 상 교원 등
-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.
-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.
-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였다.

- 이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.
- 또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.
-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,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, ③ 피해장애인 보호절차,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되었으며,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(50분)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.
-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(<http://www.naapd.or.kr>) 및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·도 교육청,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하였으며, 동영상은 국가평생 학습포털 늘배움(<http://www.lifelongedu.go.kr>) 등에도 탑재하여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-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을 지도·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(4개 부처 39개 부서)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기관·시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.
-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 라며, “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

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
 2.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(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)
 3.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배포처
 4.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	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종균 (044-202-3310)
		담당자	서기관	최기전 (044-202-3301)
담당 부서	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	책임자	관 장	은종균 (02-6951-1791)
		담당자	팀 장	김현정 (02-6951-1792)

붙임 1
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

□ 기본개요

- (목적)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
 - 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(예시 : 사회복지시설, 장애인활동지원기관, 의료기관 등)의 장과 종사자 등
- (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
- (내용)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

□ 신고 불이행 시 제재

- (과태료)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(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[별표 5]

□ 신고자 보호 조치

- (내용)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(법 제59조의6)

붙임 2

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[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]

근거	신고의무자		관계 중앙행정기관	
	신고의무자직군	신고의무자 소속기관·시설		
1호	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	시도, 시군구, 읍면동 등	보건복지부 (지역복지과)	
1호	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(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을 포함)	노인복지시설 * 노인복지법	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,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	보건복지부 (노인정책과)
			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	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)
			노인여가복지시설, 노인일자리지원기관	보건복지부 (노인지원과)
		복합노인복지시설		보건복지부 (복지정책과)
		아동복지시설 * 아동복지법	아동양육시설, 아동 일시보호시설, 아동 보호치료시설, 공동 생활가정, 자립지원 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	보건복지부 (아동권리과)
			지역아동센터	보건복지부 (인구정책총괄과)
			아동보호전문기관	보건복지부 (아동학대대응과)
		다함께돌봄센터 * 아동복지법		보건복지부 (인구정책총괄과)
		장애인복지시설 * 장애인복지법 제58조	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쉼터	보건복지부 (장애인권익지원과)
			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	보건복지부 (장애인서비스과)
			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	보건복지부 (장애인자립기반과)
			장애인 의료재활시설	보건복지부 (장애인정책과)
		노숙인시설 * 노숙인복지법		보건복지부 (자립지원과)
지역자활센터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		보건복지부 (자립지원과)		
사회복지관 * 사회복지사업법		보건복지부 (지역복지과)		
결핵·한센시설 * 사회복지사업법		보건복지부		

근거	신고의무자		관계 중앙행정기관 (질병정책과)
	신고의무자직군	신고의무자 소속기관·시설	
2호	제32조4에 따라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하는 자 (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)	보건복지부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	보건복지부 (장애인권익지원과)
2호	장애인활동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	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	보건복지부 (장애인서비스과)
2호	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	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	보건복지부 (장애인서비스과)
3호	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(의사)	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보건복지부 (의료인력정책과)
3호	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(간호사, 조산사)	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보건복지부 (간호정책과)
3호	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(치과의사)	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(구강정책과)
3호	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(한의사)	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(한의약정책과)
3호	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	의원급 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, 조산원, 병원급의료기관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, 종합병원)	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
4호	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 의료기사	의료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보건복지부 (의료자원정책과)
5호	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	응급구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보건복지부 (응급의료과)
6호	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	119구급대원의 대원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소방청 (119구급과)
7호	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정신건강복지센터	보건복지부 (정신건강관리과)



근거	신고의무자		관계 중앙행정기관
	신고의무자직군	신고의무자 소속기관·시설	
7호	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	보건복지부 (정신건강정책과)
8호	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	어린이집	보건복지부 (보육기반과)
9호	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	유치원	교육부 (유아교육정책과)
9호	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	유치원	교육부 (유아교육정책과)
10호	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	초등학교,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	교육부 (학교정책과)
11호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	학원	교육부 (평생학습정책과)
11호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	교습소	
12호	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	성폭력피해상담소	여성가족부 (권익지원과)
12호	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(일반보호시설, 장애인보호시설, 특별지원 보호시설, 외국인보호시설 등)	여성가족부 (권익지원과)
12호	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	여성가족부 (권익지원과)
13호	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일반지원시설, 청소년지원시설, 외국인 지원시설 등	여성가족부 (권익기반과)
13호	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	성매매피해상담소	여성가족부 (권익기반과)

근거	신고의무자		관계 중앙행정기관
	신고의무자직군	신고의무자 소속기관·시설	
	장과 그 종사자		
14호	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	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	여성가족부 (권익기반과)
14호	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(단기보호시설, 장기보호시설, 외국인보호시설 등)	여성가족부 (권익기반과)
15호	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건강가정지원센터	여성가족부 (가족정책과)
16호	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다문화가족지원센터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17호	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그 종사자	아동권리보장원	보건복지부 (아동복지정책과)
17호	「아동복지법」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가정위탁지원센터	보건복지부 (아동권리과)
18호	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한부모가족복지시설(모자가족복지시설, 부자가족복지시설,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)	여성가족부 (가족지원과)
19호	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)	여성가족부 (청소년자립지원과)
		청소년 활동시설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 문화의 집 등)	여성가족부 (청소년활동안전과)
19호	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	청소년단체(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등)	여성가족부 (청소년정책과)
20호	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	여성가족부 (청소년보호환경과)
21호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	장기요양요원이 종사하는 기관	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)
21호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	국민건강보험공단(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)	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)
22호	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장애인평생교육시설	교육부(평생 학습 정책과, 특수교육정책과)

붙임 3

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배포처

배포처	배포처 종류	배포처 이용자	수강 시스템 유무
전국 시·도 교육청	교육청 (17개소)	초·중·고·특수학교 종사자	○
부산광역시(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)	공공기관 (32개소)	부산시 관내 신고의무자	○
인천광역시(인천e배움캠퍼스)		인천시 관내 신고의무자	○
대전광역시(대전평생교육진흥원)		대전시 관내 신고의무자	○
세종특별자치시(세종e배움터)		세종시 관내 신고의무자	○
경기도(경기도평생학습포털)		경기도 관내 신고의무자	○
서울특별시(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)		서울시 관내 신고의무자	○
병무청(사회복무연수센터)		사회복지기관 내 사회복지요원	-
국립정신건강센터(정신건강교육과)		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요양시설 종사자	×
국민연금공단(장애인지원실)		서비스지원조사자	○
국민건강보험(요양기획실)		장기요양인정신청 조사자	○
국가평생교육진흥원(국가평생학습포털)		대국민	○
한국여성인권진흥원		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상담소 등 종사자	×
한국건강가정진흥원		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	×
아동권리보장원		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,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	×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	의료기관 종사자	×
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		청소년시설 종사자 등	×
한국보육진흥원		어린이집(보육교직원)	○
한국노인인력개발원		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자	×
한국노인복지진흥원		노인 복지 관련 종사자	×
한국자활복지개발원		자활센터 종사자	×
한국사회복지협의회		사회복지 종사자	×
한국사회복지관협회		사회복지관 종사자	×
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		자원봉사센터 종사자	×
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		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	×
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		직업재활시설 종사자	×
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		장애인복지관 종사자	×
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	주간보호시설 종사자	×	
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	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종사자	×	
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	노숙인 시설 종사자	×	
전국노숙인시설협회	노숙인 시설 종사자	×	

배 포 처	배 포 처 종 류	배 포 처 이 용 자	수 강 시 스템 유 무
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		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	×
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		자활센터 종사자	×
한국아동복지협회	신고의무자 관련 단체 (27개소)	아동복지 관련 종사자	×
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		지역아동센터 종사자	×
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			×
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		노인복지 관련 종사자	×
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			×
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			×
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		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	×
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	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	×
대한요양병원협회		요양병원 종사자	×
대한의사협회		의료인	×
대한치과의사협회			×
대한한의사협회			×
대한간호협회			○
대한조산협회			×
대한임상병리사협회			×
대한방사선사협회			×
대한물리치료사협회			×
대한작업치료사협회			×
대한치과위생사협회			×
대한치과기공사협회		×	
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	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	×	
한국정신요양협회	정신요양시설 종사자	×	
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	보육교직원 등 종사자	×	
한국유치원총연합회	유치원 교직원 등 종사자	×	
한국학원총연합회	학원 종사자	×	
한국교습소총연합회	교습소 종사자	○	
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	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	×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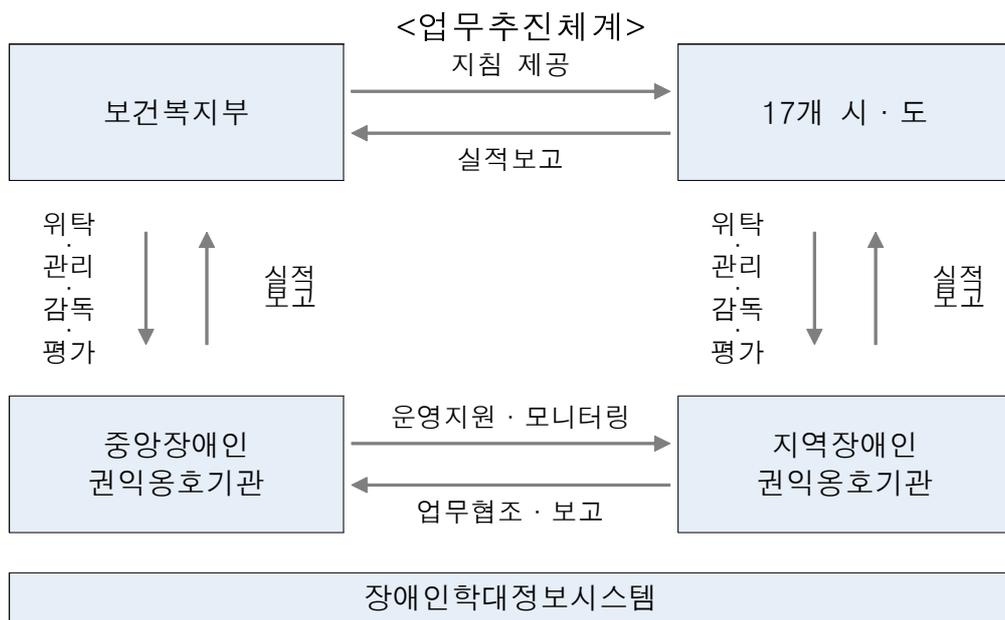
붙임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

□ 기관 개요

- (설치근거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
- (기능)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예방, 장애인학대 신고접수, 피해자 지원, 사후관리 업무 담당(17~)
 - (중앙) 지역기관 지원, 연구개발,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 총괄
 - (지역) 장애인학대사건 신고접수, 피해자 지원 등 장애인학대 대응

□ 설치 및 운영

- (설치현황) 중앙 1개, 17개 시도 18개 지역기관 설치(경기 2개소)
 - * '22.下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신규기관 1개소(충청북도) 설치 및 운영 예정
- (운영방식)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수탁 사업수행
 - * 중앙은 보건복지부, 지역기관은 지자체에서 위·수탁 절차 진행, 공공기관 1개소(인천 사회서비스원), 사회복지법인 1개소(울산), 그 외 장애인단체



* 학대사건의 신고접수(☎1644-8295) 및 피해자 지원은 지역기관에서 담당